

『구미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
지역범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2년 5월 17일

나. 발 의 자 : 김태근, 김성현, 김재상, 김정곤, 김정미,
박교상, 박주연, 윤종호, 이수태, 임춘구

다. 회부일자 : 2012년 5월 17일

라. 상정일자 : 2012년 5월 21일

제16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김 태 근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본 조례안은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
시·군 단위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
시설의 지역범위 적용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어 존치 이유가
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「구미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」를 폐지함.

라. 참고사항

- 「구미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」
- 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」 제3조, 제4조
- 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」 제13조2항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희 철

-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「구미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 지역범위에관한조례」를 제정('95.1.1. 조례 제81호)하여 운영하여 왔으나,
- 시행령이 전부개정(대통령령 제15097호 '96.6.29.)되면서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 등에 대해서는 시·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시의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